#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05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문대림・김 윤・문금주

강득구 • 이병진 • 이원택

양문석 • 윤준병 • 임호선

주철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어촌계가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창고와 작업실 등을설치한 후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왔음.

그런데 2000년대 초 정부에서 해당 시설물을 국유재산으로 한꺼번에 등록함에 따라 제주도 어촌계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어촌계 공동창고 및 해녀 탈의실 등에 대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를둘러싼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해녀는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어촌계가 사용하는 공동 창고 등에 대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거나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어촌계가 사용하는 국유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녀 문화 계승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어촌계 주민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유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시설로서 어촌계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거나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시설에 대하여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그 밖에 무상 사용의 내용·조건 및 사용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제15조의2(국유시설 사용허가에     |
|                    |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국유      |
|                    | 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
|                    | 령으로 정하는 국유시설로서        |
|                    | 어촌계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       |
|                    | 사업에 사용하거나 전통 어업       |
|                    | 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사용       |
|                    | 하는 국유시설에 대하여 어촌       |
|                    | 계에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
|                    | <u>수 있다.</u>          |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
|                    |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      |
|                    | 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      |
|                    | 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     |
|                    | 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
|                    | <u>10년을 초과할 수 없다.</u> |
|                    | ③ 그 밖에 무상 사용의 내용      |
|                    | ·조건 및 사용허가의 절차·       |
|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
|                    | 령령으로 정한다.             |